

한국 경찰 복지시설의 확충방안: 경찰 수련원을 중심으로

Expansion Plan for Police Welfare Facilities in South Korea: Focused on the Police Training Center

성웅은*, 윤병훈**
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동대학교 경찰학과**

Yong-Eun Sung(ysung@kdu.ac.kr)*, Byoung-Hoon Youn(hoony0710@daum.net)**

요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경찰 수련원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확충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 경찰 수련원의 문제점의 분석결과, 첫째, 노후화, 둘째, 군이나 소방 등 다른 유관기관의 수련 시설과 비교할 때 시설 부족, 셋째, 운영예산의 부족이 지적되었다. 경찰 복지수련원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확충방안으로, 첫째, 경찰 수련원의 민간위탁방식 도입, 둘째, 경찰 수련원에 대한 용어 규정의 명확화, 셋째, 경찰 수련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예산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 경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 중심어 : | 경찰 복지 | 경찰 수련원 | 경찰 스트레스 | 경찰 피로 | 민간위탁 |

Abstract

The current study assessed the problems of police training center and explored the expansion plan of the center in order to improve the welfare condition of police in South Korea. The results indicated that: 1) deterioration of the facilities; 2) shortage of the facilities compared with the others such as the facilities of military and firefighter; 3) shortage of operation budget. It was suggested to cope with these problems that: 1) employing a government outsourcing of the facilities; 2) disambiguation of the definition of police training center; 3) security of budget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facilities. The policy implications to enhance the police welfare in South Korea and the limitations were discussed at the last part of the research.

■ keyword : | Police Welfare | Police Training Center | Police Stress | Police Fatigue | Government Outsourcing |

I. 서론

경찰 업무는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과 위험에 직면되어 있다[1]. 2006년부터 2011년간 순직·공상 경찰관 현황을 살펴보면, 순직의 경우 과로로 인한 경우가 전체 80명 중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공상의 경우 안전사고가 전

체 8,495명 중 3,4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범인피격, 교통사고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경찰이 얼마나 어려운 돌발 상황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2]. 또한, 경찰은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한 위험한 근무환경과 24시간 교대근무 등 업무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와 피로에 노출되어 있다. 경찰 공무원의 약 80% 이상이 24시간 교대제 근무방식에 배

접수일자 : 2016년 01월 06일
수정일자 : 2016년 01월 28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1월 28일
교신저자 : 윤병훈, e-mail : hoony0710@daum.net

치되어 있는 점에서 대부분의 경찰공무원은 심각한 물리적·신체적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3]. 이 외에도 최근 급변하는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찰업무의 위험성, 돌발성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범위가 일차적 외상사건 뿐만 아니라 이차적 외상사건에까지 빈번히 노출되고 있다[4]. 그러나, 대부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24시간 교대 근무의 당위성만을 강조하지만 경찰관들이 일반적으로 일·이차적 외상사건의 경험이 야기시키는 직무 및 업무관련 스트레스 문제에 아직도 학계 및 정부 차원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5]. 즉 경찰공무원의 업무에서 오는 피로감이나 스트레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사실, 경찰공무원에게 경찰로서의 사명감과 의무감만을 강조하고 개별 경찰관이 받는 스트레스나 피로감에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경찰의 조직적 측면에서 강구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경찰로부터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반시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6]. 실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경찰공무원들은 후생복지 분야와 개인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항목에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7].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후생복지 내 여가생활의 부족과 관련하여 경제적 부담과 시간 상의 제약을 가장 많은 이유로 응답하였다. 아울러, 가장 원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여행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찰공무원 개인의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제약을 고려한 건전한 여가생활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수련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에 경찰복지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조사에서 경찰수련원에 대한 이용만족도는 매우만족과 다소 만족한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가 약 24%에 불과하였다[8].

즉, 경찰관 개개인의 피로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치안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여가생활을 장려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 수련원 확충이 필요하다. 경찰 복지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경찰 수련원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 수련원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 수련원의 확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II. 경찰 수련원에 대한 논의

1. 경찰 수련원에 대한 법적 근거

경찰 수련원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경찰공무원 보건의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들 수 있다. 동법은 법률 제 11334호로 2012년 2월 22일 제정되어 2012년 8월 23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동법을 제정한 목적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의 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이다. 또한, 동법에서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의 안전 및 복지 증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경찰공무원의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각각 5년마다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 보건의 안전 및 복지 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설정을 위해 실제 경찰공무원 보건의 안전 및 복지 증진 제1차 기본계획안(2014-2018)이 발표된바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4개의 수립원칙이 제시되고 있다[9]. 첫째, 삶의 질 중심의 복지이다. 이러한 관점은 외적 보상 측면을 넘어 업무의 만족도를 높이고 일과 가족의 균형을 제시함과 동시에 퇴직 후 미래 설계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경찰의 자존감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이다. 이 관점은 경제적 보상 방안의 구체적 검토를 강조하고 있다. 셋째, 유연한 복지의 강조이다. 이는 가치관 및 생활방

식의 다원화와 경찰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혜택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를 강조하는 복지이다. 이러한 4가지 수립원칙을 바탕으로 경찰 수련원에 대한 4가지 수립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2. 경찰 수련원의 의의 및 운영현황

2.1 경찰 수련원의 의의

수련원이란 영문으로 Training Facility로 표기되며, 보편적 개념으로는 직무상 교육훈련, 각종 행사나 회의, 조직구성원의 휴식 등을 통한 직무 능력 및 조직 내 몰입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보편적 개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수련원과 혼용되는 용어로 휴양시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 개념의 차이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휴양시설이란 영문으로 Recreation Facility라고 표기되며, 여가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고취시켜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부가적인 목적으로는 휴양시설 내 제공되는 각종 부대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0]. 즉,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수련원과 휴양시설은 일상생활에서 유사한 개념으로써 혼용되고 있으나 상호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경찰에서 역시 수련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 3호가 바로 그것이다. 동법에서는 복지시설을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복지시설은 다시 4개의 범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범주로는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의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주유소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범주로는 보육시설, 주거시설이 포함된다. 세 번째 범주로는 수련원, 연수원이 포함된다. 마지막 범주로는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시설이 포함된다. 복지시설의 이러한 4가지 범주 내에 경찰 수련원은 수련원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2 경찰 수련원 운영현황

경찰수련원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법」 제2조 3호에 제시되어 있는 수련원을 2013년 기준으로 강원도 1개소, 충청도 1개소, 전라도 1개소, 경상도 3개소, 제주도 2개소로 총 8개소가 운영 중이다. 각 지역별 현황과 수련원 명칭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11]. 먼저, 인천지역에는 강화수련원이 있다. 강화수련원은 경찰수련원 중 가장 최근에 지어진 수련원으로서 (2012년 12월 24일 준공), 34개실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 지역 내에는 강릉수련원이 있다. 강릉수련원은 22개의 객실이 있으며, 일반실 11실과 특실 11실로 구분된다. 충청도 지역에는 대천수련원이 있다. 대천수련원은 총 32개의 객실이 있으며, 11.5평 6실과 9.5평 26실로 구분된다. 전라도 지역에는 변산수련원과 진도수련원이 있다. 변산수련원에는 총 16개의 객실이 존재하며, 16개의 객실은 15평 객실 12실과 20평 객실 4실로 구분된다. 진도수련원은 총 26개의 객실로 19평 객실 16실과 24평 6실, 그리고 14평 4실로 구분된다. 경상도 지역에는 영덕수련원, 통영수련원이 있다. 영덕수련원은 30개의 객실로 10평 20실, 16평 8실, 20평 2실로 구분된다. 통영수련원은 18개의 객실로 구성되며, 24평/17평/13평/9평 객실이 각각 1실씩 제공되고, 12평 11실, 9평 3실이 제공되고 있다. 제주지역에는 제주한라수련원이 있으며, 36개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15평 18실, 20평 13실, 25평 5실이 제공된다.

표 1. 경찰 수련원 현황(2013년 기준)

지역	수련원 명칭(객실수) /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수련원(34)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320
강원도	강릉수련원(22)
	강원도 강릉시 건소동 223-1
충청도	대천수련원(32)
	충청남도 보령시 신흥동 2051
전라도	변산수련원(16)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559-1
전라도	진도수련원(26)
	전라남도 고군면 금계리 153-1
경상도	통영수련원(18)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자산리 118
경상도	영덕수련원(30)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덕천리 190-42
제주도	제주한라수련원(3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381

이러한 경찰 수련원은 경찰복지후생관 멤버십 회원에 한해 성수기 2일, 비수기 8일로 연간 10일(연회비 99,000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수련원 외에 휴양시설에 대한 이용도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시설이 민영콘도이다. 민영콘도에 대한 세부내용은 표 2와 같다. 민영콘도는 2013년 기준 강원도에 민영콘도 및 펜션 3개소(제너두 둔내, 설악 현대 웨미리, 아이파크 콘도), 경기도에 민영패밀리 호텔 1개소(양평힐하우스), 충청북도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충주보훈휴양원과 민영콘도인 도고글로리로 총 2개소, 남부권에는 민영콘도 4개소(덕구온천콘도, 해운대 글로리콘도, 지리산 토비스콘도, 무주 토비스 콘도), 제주도에는 민영콘도 2개소(제주 동양콘도, 제주 토비스 콘도)가 있다.

표 2. 경찰공무원의 이용가능한 회원제 휴양시설

지역	휴양시설		
강원도	제너두 둔내 (민영)	설악 현대 웨미리 (민영)	아이파크 콘도 (민영)
경기도	양평힐하우스(민영)		
충청북도	충주 보훈휴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	도고글로리 (민영)	
남부권	덕구온천콘도(민영)	해운대 글로리콘도(민영)	
	지리산 토비스콘도(민영)	무주 토비스콘도(민영)	
제주권	제주 동양콘도 (민영)	제주 토비스콘도 (민영)	

2.3 유사기관의 수련원 운영현황

경찰과 업무나 조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 기관으로 군과 소방조직을 선정하여 이들 기관의 수련원이나 휴양시설의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군의 수련원과 휴양시설의 운영현황은 [표 3]과 같다[12].

표 3. 군 수련 및 휴양시설 현황

운영형태	지역	시설명(객실수)
수련원 (직영운영)	강원도	청간정콘도(37)
		화진포콘도(34)
		송정휴양소(43)
	충청남도	대전콘도 1관(47)
		대전콘도 2관(38)
제주도	서귀포호텔(71)	
민영운영	전국의 민영콘도 및 호텔(62)	

군 수련원과 휴양시설의 이용대상은 하사 이상 현역 군인 신분과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전역한 군인인 예비역 신분, 군무원으로서 군무원 신분, 기타 신분으로 이용대상이 구별되고, 신분별·등급별·근무년수 등을 고려한 점수로 객실예약에 우선순위를 두고 차등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군 수련원은 강원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다. 먼저, 강원도 지역의 경우에는 청간정콘도와 화진포콘도, 송정휴양소 등이 있다. 이중 송정휴양소가 객실수 43개로 객실규모가 가장 크다. 충청남도 지역에는 대전콘도 1관과 대전콘도 2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전콘도 1관이 47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다 객실규모가 대전콘도 2관보다 크다. 제주도 지역의 수련원으로는 서귀포호텔이 유일하며 71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군의 경우에는 수련원 외에 민영으로 운영하는 전국의 약 62개의 민영콘도나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경찰에서 민영콘도와의 제휴를 통해 활용하는 업체 12곳보다 약 5배나 많다.

소방조직의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수련원은 없으며, 민영콘도와의 제휴를 통해 이용하는 휴양시설은 전국의 한화리조트(회원권) 및 소방공제회와 협약시설을 이용하는 형태로 구분된다.

한화리조트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 운영지원과에서 예약을 대행하며, 회원권은 2006년 정부업무평가포상금 6,800만원으로 소방방재청에서 구매하였고(회원권 기간: 2007. 6-2027. 6), 구매한 회원권을 소방공무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일수는 개인별로 56박이며, 객실이용금액은 시중가 대비 40-50%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 소방공제회 협약시설의 경우 이용대상은 소방공제회 가입회원 및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이며, 대상시설은 [표 4]와 같다[13].

표 4. 소방공제회 협약시설 현황

지역(개소)	수련원 명칭
수도권(2)	라마다 송도호텔, 청평풍림리조트
강원권(2)	설악켄싱턴호텔, 성우리조트
충청권(2)	청풍리조트, 레이크힐스 속리산
호남권(2)	해남평갈호텔, 레이크힐스 순천
영남권(2)	레이크힐스 부곡, 호텔농심
제주권(3)	풍림리조트, 레이크힐스, 금호리조트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2개소, 강원권 2개소, 충청권 2개소, 호남권 2개소, 영남권 2개소, 제주권 3개소로 한전국 13개소 협약시설에 대해 이용가능하고, 객실이용금액은 시중가 대비 60-70%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13].

III. 경찰 수련원의 문제점 및 확충방안

1. 경찰 수련원의 문제점

1.1 경찰 수련원의 노후화

경찰 수련원은 2012년 12월 24일 강화수련원 준공을 시점으로 하여 전국 관광명소 주변에 8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일부 시설의 경우 준공된지 2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강릉수련원, 대천수련원), 수련원 내 부대 시설이나 편의시설, 그리고 객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2013년에 경찰복지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조사의 응답결과에서도 경찰수련원에 대한 이용만족도가 낮은 이유 역시 경찰 수련원의 노후화 등 제반여건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1.2 경찰 수련원의 부족

경찰 수련원은 전국에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제주 한라수련원, 강화수련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객실의 수가 30개가 되지 않는다. [표 5]에서 제시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의 경찰 수련원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이용인원이 적은 강원, 강릉권역 내 경찰수련원의 경우도 약 2만 여명이 이용할 만큼 경찰 수련원을 이용하는 경찰관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10].

표 5. 경찰 수련원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강원 강릉	충남 대전	전북 변산	전남 진도
2008년	16,838	29,055	20,112	22,220
2009년	21,317	33,459	21,330	22,796
2010년	19,813	32,939	20,448	20,793
2011년	17,765	34,674	21,756	23,218
2012년	19,127	34,792	16,282	23,242
구분	경남 통영	경북 영덕	제주 한라	계
2008년	-	-	-	88,225
2009년	-	-	-	98,225
2010년	22,673	-	-	116,666
2011년	21,337	42,371	34,210	195,331
2012년	23,454	36,000	47,199	200,610

1.3 경찰 수련원에 대한 운영예산의 부족

2011년 기준 경찰 수련원의 운영 예산 현황은 아래의 [표 6]과 같다[10].

표 6. 경찰 수련원 운영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강원/강릉	충남/대전	전북/변산
수입	0	87,990	49,050
지출	104,950	228,340	125,700
구분	전남/진도	경남/통영	경북/영덕
수입	43,280	107,530	110,310
지출	206,540	146,210	207,250
계	수입 : 436,910		지출 : 1,270,180

강릉 수련원의 경우 시설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수련원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실정이다. 경찰 수련원의 운영 예산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남 대천 소재 수련원의 경우 수입은 87,990,000원인 반면, 지출은 228,340,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북 변산 수련원의 경우 수입은 49,050,000원이며, 지출은 125,700,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남 진도내 수련원의 경우 수입은 43,280,000원인 반면, 지출은 206,540,000원으로 나타났다. 경남 통영 소재 수련원의 경우 107,530,000원이었으며, 지출은 146,210,000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북 영덕내 수련원의 경우 수입은 110,310,000원, 지출은 207,250,000원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11년 기준 경찰 수련원의 수입은 436,910,000원인 반면, 지출은 1,270,180,000원으로 지출이 수입대비 약 3배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로 볼 때, 경찰 수련원의 운영 예산 중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경찰 수련원의 확충방안

2.1 경찰 수련원에 대한 민간위탁방식의 도입

현재, 경찰 수련원의 경우 경찰 복지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있으나, 경찰 복지 예산 중에서도 실제 경찰 수련원에 포함되는 예산은 거의 미미한 실정이다. 문제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찰 수련원 자체 수입원은 전적으로 객실 요금비용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출보다 훨씬 적은 범위 내의 수입이기 때문에, 낙후된 시설에 투자될 비용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찰 수련원을 이용하는 이용객(경찰 및 경찰가족 등)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낙후된 경찰 수련원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보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위탁방식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 제3항에서도 경찰청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 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위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복지시설 등의 운영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 복지시설 등 이용자의 편익이 증가하는 경우, 그 밖에 경찰청장이 복지시설 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로 보고 있다. 경찰 수련원의 노후·낙후화 등 현 실태를 종합해볼 때, 경찰 예산 범위 내에서 경찰 수련원을 현재와 같이 운영하는 방안보다 민간위탁방식을 통해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2.2 경찰 수련원에 대한 용어 규정의 명확화

현재 경찰 수련원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상의 복지시설 내 하위 범주로 수련원이 이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뿐, 복지시설 내 다른 범주에 속해있는 연수원이나 경찰공무원 및 그 가족의 여가나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수련원과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보다 집중적으로 수련원을 확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복지시설 내 여러 범주에 속해있는 시설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이러한 용어 경계의 모호성이 경찰 수련원에 대한 확충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동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복지시설의 범주로 축소시키거나 용어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군인복지기본법」에서는 복지시설을 휴양소 및 콘도미니엄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수련원에 대한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상의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수련원 이외의 여

가시설 등을 함축하는 시설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군이나 소방분야의 복지에 관한 법규에서의 수련원이나 또는 휴양시설의 개념은 상당히 간명하고 그 범위가 명확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복지에 관한 법률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상에서는 수련원 이외에 여가시설에 대한 용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군인복지기본법」이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상의 복지시설의 규정과 같이 용어를 단일화시키거나 축소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용어가 단일화되거나 축소된다면, 추후 경찰 복지시설의 기본계획 수립시 보다 집중적으로 수련원에 대한 문제점이 진단되고 개선되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2.3 경찰 수련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예산 확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5조에서는 5년마다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주요 내용 중 경찰공무원의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제1차 기본계획안(2014-2018)에 따르면, 주로 맞춤형 복지나 퇴직 후 미래설계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이나 예산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경찰 수련원은 전적으로 객실 이용요금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만으로는 경찰 수련원에 대한 효율적 운용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 수련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으로 2가지 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데, 첫째 경찰 복지 예산 배정시 경찰 수련원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경찰 수련원의 개·보수를 통해 경찰 수련원에 대한 이용요금을 인상하여 수입원을 늘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예산을 확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IV. 결론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불철주야 국민에 봉사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찰관 개개인은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피로 증대와 범죄 및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경험에서 초래될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은 경찰에 대한 복지의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정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경찰 복지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법률 제11334호로 2012년 2월 22일 제정되어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그간 열악한 경찰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온 경찰 복지제도에 대해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라는 법률적 장치마련을 바탕으로 경찰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현실화된 이 시점에서 이 연구는 특히, 경찰 복지 요소 중 여가와 관련된 경찰 수련원에 초점을 두어 경찰 수련원이 지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토대로 경찰 수련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경찰 수련원에 대한 민간위탁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찰 수련원을 방문하면서 얻는 수입보다 시설보수나 유지 등 지출이 더 많은 현실 속에서 현재 운용중인 수련원 시설이나 추후 경찰 부지에 건설될 수련원 시설에 대해 민간위탁 방식을 도입한다면, 보다 좋은 수련원 시설이 제공되어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이다. 둘째, 경찰 수련원에 대한 용어 규정의 명확화를 제시하였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상에서는 5년마다 경찰 복지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 수련원이 이러한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는데 있어 주축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범주에 속해 있으며, 조문상 수련원의 명칭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련원 시설의 객실 투숙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만으로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

을 통해, 경찰 수련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경찰 복지시설 내 여러 범주 중 경찰 수련원이 가지고 있는 법·제도적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찰 복지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련원에 대한 연구가 전무했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는 학술적, 정책적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찰 수련원의 확충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경찰관 개개인의 인식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추후 관련 연구에서는 경찰 수련원 운영의 개선을 위해서 이용자인 경찰관과 수련원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증조사연구를 실시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추가적으로 논의 될 것을 기대한다.

참고 문헌

- [1] 광대경, 김도우, 김미경, “경찰업무로 유발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7권, 제3호, pp.23-46, 2011.
- [2] <http://www.police.go.kr/assembly/main.do>
- [3] 박주상, 최응렬, “교대근무 경찰공무원의 수면장애, 피로 및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제5권, 제1호, pp.25-53, 2010.
- [4] L. Carlier, R. Lamberts, and B. Gersons, “Risk factors for posttraumatic stress symptomatology in police officers: a prospective analysi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l.185, No.8, pp.498-506, 1997.
- [5] M. E. Clair,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incidents, hostility and PTSD symptoms in police officers*, Doctoral Dissertation, Drexel University, Philadelphia, USA, 2006.
- [6] 이황우, 최응렬, 정우일,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연구: 의료 및 조직보건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3권, pp.403-422,

2007.

- [7] 허경미, 최기문, “경찰공무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통권 제24권, pp.11-46, 2006.
- [8]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경찰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경찰청 연구용역보고서, 2011.
- [9] 신현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제1차 기본계획안의 현황,” 경찰복지연구, 제2권, 제2호, pp.3-30, 2014.
- [10]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경찰복지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 경찰청 연구용역보고서, 2013.
- [11] <http://www.ipodori.or.kr>.
- [12] <http://www.welfare.mil.kr>.
- [13] <http://www.sogong.com/main/main.do>

저 자 소 개

성 용 은(Yong-Eun Sung)

정회원



- 2007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범죄학 박사)
- 2013년 12월 : Rutgers University-Newark, School of Criminal Justice (Criminal Justice 박사수료)
- 2014년 3월 ~ 현재 : 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사이버범죄 및 안전, 범죄두려움, 경찰 복지, 경찰입직 및 교육훈련

윤 병 훈(Byoung-Hoon Youn)

정회원



- 2008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 석사)
- 2015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 박사)
- 2015년 3월 ~ 2015년 12월 : 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 2016년 3월 ~ 현재 : 경동대학교 경찰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경찰복지, 경찰승진, 경찰 조직성과